

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5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

2. 개정이유

- 도서관 조직개편 후 분리되어 있던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「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」의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, 일몰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일몰사업 삭제(안 제2조제1호)
-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수정 및 삭제(안 제3조제1항, 제9조 ~ 제15조)
-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3조제2항제3호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25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쇄재로33, 파주시 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(우 10917)
- 전화 : 031)940-5642 / Fax 031)940-564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